

자주 묻는 질문

투표에 대한 질문

예비선거가 무엇인가요?

예비선거는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원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열리는 선거입니다. 예비선거 당선자는 11월에 있는 본선거에서 그 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정당의 공천을 원하는 후보가 단 한 명밖에 없으면 그 당은 해당 공직에 대한 예비선거를 열지 않습니다.

내가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마감일 전까지 예비선거를 치르는 정당에 당원 가입을 마친 유권자라면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정당 규칙에 따라 특정 예비선거에서는 등록 당원이 아닌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투표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 결선투표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시장, 공익옹호관 또는 감사관처럼 시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의 경우,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최소 40%를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두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정당이 치른 예비선거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그 정당이 치르는 예비선거 결선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본선거에서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공직 당선을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어느 정당에 가입했는지와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안에 대해서는 찬성("yes") 또는 반대("no")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기만 했다면 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특별선거가 무엇인가요? 나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특별선거는 임기 중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또는 다른 이유로 직위가 공석이 되어 이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맡을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특별선거가 시행됩니다. 특별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마감일 전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특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무엇인가요?

주민투표는 투표를 통해 유권자에게 특정한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안 중에는 뉴욕주 헌법 및 뉴욕시 헌장에 대한 개정안이나

채권과 관련된 안건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시민 개인이나 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내 유권자 등록이 만료되었을 수 있나요?

유권자 등록은 만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번의 연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거나 이사한 다음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바른 투표소에 가더라도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사용해 투표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투표한 다음 뉴욕시 내에서 이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욕주 법에 따라 이사를 하면 25일 이내에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Voting information that has changed” 칸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써넣으십시오. 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고 당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정당을 표시한 다음 (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을 때 이미 당원 등록을 했더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른 기재사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이사한 다음 마감일 전까지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새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가서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로 투표하십시오. 866-VOTE-NYC(866-868-3692)로 전화하시면 주소변경 신청이 등록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갔는데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본인 주소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지구와 선거구에 해당하는 줄에 섰는지 확인하십시오. 어셈블리 지구와 선거구 번호는 이 안내서의 우편 라벨과 선관위에서 8월마다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우편엽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는 선거관리 요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선관위 웹사이트에 있는 투표소 확인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본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줄에 섰는데도 유권자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면 귀하의 유권자 등록신청서가 아직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투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요원에게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달라고 요청하신 후, 요원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는 제반 기록을 확인하여 귀하의 투표자격이 확인되면 이를 유효표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지와 미래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디에서 투표해야 하나요?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 2~3주 내에 받게 되는 유권자 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카드는 귀하의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한다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뉴욕시나 미국에 있지 않은 경우; 일시적 또는 고질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입원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재향군인병원, 유치장 및 감옥에 구금된 경우; 대배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중범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경우.

부재자 투표는 우편으로 하거나 선관위 사무실에 들러 직접투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시려면 **866-VOTE-NYC (866-868-3692)**에 전화해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선관위 웹사이트(www.vote.nyc.ny.us)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를 작성해 귀하가 사는 보로의 선관위 사무실에 마감일 전까지 우편으로 보내시면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받으신 투표용지를 기입해 보로 선관위 사무실로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부재자 직접투표는 투표용지 제작이 끝난 시점(늦어도 선거일 **32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중(월~금)과 선거일 전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선거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귀하의 보로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귀하를 대신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배부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보로 선관위 사무실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편을 통해 전해 받은 부재자 투표 신청서와 투표용지를 빠짐없이 기입하시고 반드시 선거일 오후 **9시**까지 보로 선관위 사무실로 제출하십시오.

이번 선거에 어떤 경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뉴욕시 온라인 유권자 안내서(www.nycffb.info/voterguide)를 참조하시면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주민투표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 및 시의원 경선과 같은 지역 경선이 있거나 뉴욕시 주민투표가 있는 선거 해에는 인쇄판 유권자 안내서가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나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만약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선고받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다 마치고 나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권자 등록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나는 현재 노숙자입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유권자 등록을 하신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에 대한 질문>에 있는 등록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투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투표하는 데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 투표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등록 유권자입니다. 하지만 내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갔는데 유권자 명부에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투표할 수 있나요?

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표소에 갔는데도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면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관리요원에게 선서투표용지를 요청하기에 앞서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왔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선거가 끝난 다음 선관위는 제반 기록을 확인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자격이 확인되면 이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지와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권자 등록에 대한 질문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BOE)에 제출하십시오. 우편으로 보내셔도, 또 직접 사무실에 들러 접수하셔도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선관위 웹사이트(www.nycfb.info)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로 선관위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뉴욕시 소속 기관의 주민 서비스 사무실에서 배부받을 수도 있으며, 866-VOTE-NYC (866-868-3692;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번호는 212-487-5496)로 전화해 우편 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 또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실 경우 늦어도 투표하기 원하는 선거 25일 전까지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우편접수 경우에는 25일 전날까지의 소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차량관리국(DMV)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한 뉴욕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차량관리국 웹사이트를 방문해 계정을 만든 다음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 <http://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application>.

내가 등록 유권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유권자 등록 확인 서비스(<http://voterlookup.elections.state.ny.us>)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 866-VOTENYC(866-868-3692; 청각 장애인을 위한 번호는 212-487-5496)로 문의하십시오.

내 유권자 등록이 만료되었을 수도 있나요?

유권자 등록은 만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번의 연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거나 이사한 다음 선관위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한 다음 뉴욕시 내에서 이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욕주 법에 따라 이사를 하면 25일 이내에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Voting information that has changed” 칸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써넣으십시오. 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를 기입하고 당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정당을 표시한 다음(과거에 유권자 등록을 했을 때 이미 당원 등록을 했더라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른 기재사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이사한 다음 마감일 전까지 선관위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새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에 가서 선서투표용지(affidavit ballot)로 투표하십시오. 866-VOTE-NYC (866-868-

3692)로 전화하시면 주소변경 신청이 등록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노숙자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네. 귀하는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주소란에 귀하를 찾을 수 있는 위치(예: “센트럴 파크 86가에 있는 벤치”)를 써넣으십시오. 이 위치를 기반으로 투표소가 지정될 것입니다. 우편물 주소로는 노숙자 쉼터, P.O. Box 또는 가족의 주소를 써넣으십시오. 이곳으로 유권자 카드가 발송될 것입니다.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나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임.
- 가석방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
-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 실형이 중단되었음.
- 실형 기간을 다 마쳤음. 이 경우 유권자 등록 신청을 다시 하기만 하면 됩니다.
- 가석방된 후 형을 마쳤음. 이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 신청을 다시 하기만 하면 됩니다.
- 사면을 받았음.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뉴욕주 법원, 타주 법원, 연방 법원, 등)이 판결을 내렸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하는 데 있어 범죄 기록에 대한 그 어떤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